

의안번호	제 339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6년 2월 24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9
----------	-----

제출연월일 : 2016년 2월 2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비·성수기 차등 적용하고,
- 도민대상수상자, 명예도민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경을 추진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한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사항 등을 정하고,
- 도민 및 도내 소재 가족친화인증 기업 또는 공공기관 재직자에게 숙박시설에 대한 우선예약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 용어 변경(안 제2조)
 - 도민, 명예도민, 도민대상수상자,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재직자
- 시설사용료 조정(안 제3조)
 - 시설사용 요금을 「성수기 및 주말」 과 「비수기 주중」 으로 차등 적용
- 시설사용료의 감면 범위 개정(안 제5조)
 - 적용범위 추가 : 도민대상수상자 및 명예도민에 대한 시설사용료 50% 감경
- 숙박시설 우선예약 대상 및 범위 개정(안 제6조)
 - 숙박시설 20% 이하에 한하여 도민, 도내 소재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재직자에 대한 우선예약 시행
- 시설사용료 반환 처리기한 규정(안 제7조)
 - 시설사용료 반환시 7일 이내 예약자 지정 계좌로 입금
- 시설사용료 감경 처리방법 규정(안 제7조)
 - 시설사용일 현장 증빙 및 감경금액 당일 반환 입금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등(안 제7조, 제8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명예도민”이란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제4조에 따른 명예도민증서 수여자를 말한다.
3. “도민대상수상자”란 「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도민대상 수상자를 말한다.
4.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재직자”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 재직자를 말한다.
5. “시설사용료”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5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면제”를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면제”를 “감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면제”를 “감면”으로 한다.

1. 휴양림 업무와 관련된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면제
2. 도지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면제
3. 휴양림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면제
4. 도민대상수상자 및 명예도민: 50% 감경

제6조의 제목 “(예약금 납부와 취소)”를 “(시설예약 및 납부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①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월 5일부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 ② 도민 및 도내 소재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재직자는 숙박시설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를 통하여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위약금 처리)”를 “(시설사용료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에는”을 “경우에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처리할 수 있다”를 “처리하고,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담으 로”를 “부담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잔여”를 “남은”으로, “환불”을 “반환”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예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⑤ 제5조제4호에 따른 감경 대상자가 시설 예약 및 사용하는 경우 시설 사용일 현장에서 감경 대상 증빙이 완료된 경우에만 감경금액을 대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당일 입금하여 반환한다.

제8조 중 “별표의 시설사용요금표”를 “시설사용요금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1일요금(원)		비 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	
숲속의 집	26m ² 이하	1동/4인	35,000	50,000	
	30-36m ²	1동/6인	49,000	70,000	
	50-54m ²	1동/10인	77,000	110,000	
	58-60m ²	1동/12인	98,000	140,000	
다가구 숲속의 집	21m ²	1실/4인	35,000	50,000	
	30m ²	1실/6인	49,000	70,000	
단체숙소	84m ²	1동/1일	98,000	140,000	
복합휴양관	25m ²	1실/4인	35,000	50,000	
	38m ²	1실/6인	49,000	70,000	
	63m ²	1실/10인	84,000	120,000	

“성수기 및 주말”이란 7~8월 성수기 및 성수기 외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이거나 7세 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p> <p>2. 청소년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이거나 청소년증을 소지한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p> <p>3. 군인 :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4. 시설사용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도민”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p> <p>2. “명예도민”이란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제4조에 따른 명예도민증서 수여자를 말한다.</p> <p>3. “도민대상수상자”란 「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도민대상수상자를 말한다.</p> <p>4.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재직자”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 재직자를 말한다.</p> <p>5. “시설사용료”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5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p>		

제5조(시설사용료의 면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휴양림 업무와 관련된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도지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휴양림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예약금 납부와 취소) <신 설>

<신 설>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감면-----.

1. 휴양림 업무와 관련된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면제
2. 도지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면제
3. 휴양림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면제
4. 도민대상수상자 및 명예도민: 50% 감경

5. ----- 감면-----

제6조(시설예약 및 납부방법) ①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월 5일부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② 도민 및 도내 소재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재직자는 숙박시설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자연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약한 자가 지정기일 내에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자동으로 취소한다.

제7조(위약금 처리) ① 휴양림시설 사용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예약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하는 경우 송금수수료 등의 비용은 예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시설물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휴양림 사정으로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 사용료를 환불한다.

<신설>

휴양림 홈페이지를 통하여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③ (현행 제1항과 같음)

④ ----- 제1항 및 제2항-----

-----.

제7조(시설사용료 반환) ① -----

-- 경우에는 ----- 각 호-----

-- 처리하고,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 부담으로 --
--.

③ -----

-- 남은 ----- 반환-----.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7일 이

<신 설>

제8조(요금표의 게시) 도지사는
자연휴양림 내에 별표의 시설
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내에 예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⑤ 제5조제4호에 따른 감경 대
상자가 시설 예약 및 사용하는
경우 시설사용일 현장에서 감
경 대상 증빙이 완료된 경우에
만 감경금액을 대상자가 지정
한 계좌로 당일 입금하여 반환
한다.

제8조(요금표의 게시) -----
----- 시설사용요
금표를 -----.

관련법령 발취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